# 憲法特別委員會規程

**第 1 條(目的)** 이 規程은 黨憲 第58條의 規定에 의하여 黨內에 憲法特別委員會를 設置하고 그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.

**第 2 條(構成)** ①憲法特別委員會(이하 "委員會"라 한다)는 代表委員의 提請으로 總裁가 任命하는 20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.

②委員會에 委員長 및 幹事 各 1人을 두며, 委員長과 幹事는 委員중에서 代表委員의 提請으로 總裁가 任命한다.

**第 3 條(特別顧問·諮問委員)** ①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特別顧問을 둘 수 있다.

②委員會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.

③諮問委員은 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거나 書面으로 意見을 提出할 수 있다.

**第 4 條(委員長의 職務등)** ①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, 委員會의 會務를 統理한다.

②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幹事가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.

**第 5 條(委員會의 會議)** ①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召集한다.

②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,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.

第 6 條(分科委員會) 委員長은 委員會에 上程할 案件을 分野別로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委員會에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.

第 7 條(小委員會)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審議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委員會에 小委員會를 둘 수 있다.

②小委員會는 委員長이 委任한 特定事案을 審議하여 委員會에 報告한다.

第 8 條(行政室) 委員會의 庶務를 處理하고 會議를 補助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行政室을 둔다.

第 9 條(意見聽取등) ①委員長은 黨內의 다른 機關등에 대하여 委員會의 業務遂行에 필요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하거나 關係있는 者를 委員會에 出席하게 하여 意見을 聽取할 수 있다.

②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聽會등을 開催할 수 있다.

第 10 條(手當과 旅費) 委員會등에 出席하는 諮問委員 및 黨外의 人士와 公聽會등에 出席하는 者에 대하여는 手當과 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.

第 11 條(委任規定) 이 規程에 規定한 事項外에 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정한다.

## 附 則

이 規程은 1986 年 5 月 7 日부터 適用한다.